



시 보



제1627호 2024. 1. 2.(화)

규 칙

-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2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5

고 시

-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3차 활성화계획 (중대한)변경 고시----- 25
- 목포시 공간정보 보안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33

회람							
----	--	--	--	--	--	--	--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월 2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린

목포시 규칙 제 1863호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목포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월 2일

목 포 시 장 박 홍 료

목포시 규칙 제 1864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스포츠산업과장·전국체전추진단장”을 “스포츠산업과장”으로 한다.

제17조에 제69호부터 제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9.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
- 70.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
- 71.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제20조의2에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7.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28.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2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관한 사항
- 30. 목포종합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
- 31.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7조의2에 제104호 및 제10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4.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지원

105.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운영지원

제28조 중 “공원녹지과장”을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녹지과장”으로,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을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31조에 제8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0.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3조제2호, 제10호 및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5호 중 “대여사업”을 “대여사업 인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제34호 및 제4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8호부터 제5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49. 택시 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50.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51. 택시, 화물, 자동차 대여사업 법규위반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5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53. 유가보조금(택시, 화물) 지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자가용자동차(택시, 화물) 유상운송 허가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항 및 철도교통의 수송대책 수립

3.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4. 대중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

5. 대중교통 비상운송(비상경영 포함) 대책
6.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7.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사고보고 수리 및 처리
8.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
9.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버스)
10.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신청, 신고 수리,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약관, 사업계획
12.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관리위탁, 양도양수, 법인 합병,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
13.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개선명령
14.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송개시 기일연기 또는 기간 연장승인
15. 기타 대중교통사업에 관한 인·허가 관련사무
16.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17.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시설물 확장 및 유지관리
18.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20.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21.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시설 개선 사업

23. 대중교통 육성 관련 보조사업

24.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상반기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관광문화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인재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u>스포츠산업과장·전국체전추진단장</u>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17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68.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6조(관광문화교육국) ----- ----- ----- ----- ----- <u>스포츠산업과장</u>----- ----- ----- ----- -----</p> <p>제17조(관광과) ----- -----.</p> <p>1. ~ 68. (현행과 같음)</p> <p><u>69. 으뜸맛집 선정 및 관리운영</u></p> <p><u>70. 명인·명가 지정 및 관리운영</u></p> <p><u>71. 외식업소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u></p>
<p>제20조의2(스포츠산업과) 스포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6.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0조의2(스포츠산업과) ----- -----.</p> <p>1. ~ 26. (현행과 같음)</p> <p><u>27.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u></p> <p><u>28.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u></p>

<신 설>

<신 설>

<신 설>

제20조의3(전국체전추진단) 전국 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기본 계획 수립
2.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 위원회 구성
3.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운영 지원
4.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홍보
5.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문화 예술행사 추진
6. 목포종합운동장 건립
7. 그 밖에 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 관한 사항

제27조의2(기후환경과)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103. (생략)

<신 설>

최에 관한 사항

2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관한 사항

30. 목포종합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

31.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삭 제>

제27조의2(기후환경과) -----
-----.

1. ~ 103. (현행과 같음)
104.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1. (생략)
2. 공항 및 철도교통의 수송대책 수립
3. ~ 9. (생략)
10.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11. (생략)
12. 특별수송대책
13.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14. 사업용자동차 사고보고 수리 및 처리
15.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
16.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면허취소, 실효 확인
18. 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
19. 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약관, 사업계획
20. 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및 위탁, 휴지 또는 폐지 허가
21. 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신고 수리
22. 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현행과 같음)
<삭제>
- <삭제>

23. 자동차 운송, 주선사업허
가, 신고수리, 인·허가 개선

24. (생략)

25. 자동차 대여사업 업무

26. 자동차 운송사업 조합의 설
립 및 지도·감독 업무

27. 기타 운수사업 지도·감독
에 관한 사항

28. 운송개시 기일연기 또는 기
간 연장승인

29. 공동운수 계약 협정 및 변
경, 양도양수와 법인 합병,
상속 인가

30. ~ 33. (생략)

34.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35. ~ 42. (생략)

43.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시설물 확장 및 유지관리

44. ~ 47.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24. (현행과 같음)

25. ----- 대여사업 인허가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0. ~ 33. (현행과 같음)

<삭제>

35. ~ 42. (현행과 같음)

<삭제>

44. ~ 47. (현행과 같음)

4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
가 업무

49. 택시 운송사업 인허가 업무

50. 택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
자 교육

51. 택시, 화물, 자동차 대여사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업 법규위반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5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53. 유가보조금(택시, 화물) 지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4. 자가용자동차(택시, 화물) 유상운송 허가

제33조의2(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 정책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항 및 철도교통의 수송대책 수립

3.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4. 대중교통 불편 신고센터 운영

5. 대중교통 비상운송(비상경영 포함) 대책

6.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7.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사고보고 수리 및 처리

8.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
9.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버스)
10.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의 면허·등록 신청, 신고 수리,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약관, 사업계획
12.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관리위탁, 양도양수, 법인 합병, 휴·폐업 등에 관한 사항
13.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개선명령
14.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송사업 운송개시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승인
15. 기타 대중교통사업에 관한 인·허가 관련사무
16.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관한 업무

17.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시설물 확장 및 유지관리

18.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공형 버스 운영 지원 및 확대에 관한 사항

20.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지원 및 정산

21.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시설 개선 사업

23. 대중교통 육성 관련 보조사업

24. 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 (생략)

제33조의3 (현행 제33조의2와 같음)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월 2일

목 포 시 장 박 홍 립

목포시 규칙 제 1865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직급별							
총 계		1,374	691	35	81	232	335
정무직	계	1	1	0	0	0	0
	시장	1	1				
일반직	계	1,353	683	35	81	219	335
	3급	1	1				
	4급	9	5	1	1	2	0
	5급	71	31	3	3	11	23
	6급	274	157	6	15	49	47
	7급	335	195	18	18	51	53
	8급	344	148	6	30	58	102
	9급	319	146	1	14	48	110
연구직	계	17	4	0	0	13	0
	연구관	0					
	연구사	17	4	0	0	13	0
지도직	계	3	3	0	0	0	0
	지도관	0					
	지도사	3	3	0	0	0	0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374	691	35	81	232	335
정무직		합계	1	1				
		시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353	683	35	81	219	335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행정	3	3				
		기술	1			1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71	31	3	3	11	23
		행정	14	7	1			6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7	11			4	2
		행정+학예연구관	1				1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4					4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공업+농업+간호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녹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2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계	274	157	6	15	49	47
		행정	59	30	5		2	22
		세무	7	7				
		사회복지	9	4				5
		방호	1				1	
		공업	2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			1		
		시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5	13				12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녹지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3					3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4	4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6	3			3	
		행정+시설	46	29			17	
		행정+학예연구사	2				2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2			2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9	8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공업+시설	10	9			1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5	5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사무운영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공업+전기운영+기계운영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운전	4	4				
		운전+기계운영	1	1				
		토목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전기운영+사무운영						
		사무운영	4	3			1	
	7급	소계	335	195	18	18	51	53
		행정	110	53	16		13	28
		세무	22	21			1	
		사회복지	41	22				19
		전산	4	2	1		1	
		속기	1		1			
		방호	1				1	
		공업	22	10			12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5	5				
		보건	1			1		
		의료기술						
		간호	6			6		
		환경	5	3			2	
		시설	27	19			8	
		방송통신	4	4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0	4				6
		행정+전산	6	5			1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간호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4	3			1	
		행정+식품위생	1	1				
		행정+학예연구사	1				1	
		사회복지+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3	2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4			4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수의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전	15	14			1	
		위생						
		토목운영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3				3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1				1	
		사무운영						
	8급	소계	344	148	6	30	58	102
		행정	91	42	2		17	30

	세무	11	9			2	
	사회복지	57	21				36
	속기	2		2			
	전산	4	4				
	공업	19	4		1	14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4	4				
	보건	5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간호	33			10		23
	환경	3	1			2	
	시설	28	18			10	
	방송통신	3	1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3	3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방재안전						
	행정+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시설	1	1				
	공업+환경	3	2			1	
	공업+시설	4	3			1	
	녹지+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1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2	1		1		
		방호						
		운전	14	12	1		1	
		위생						
		건축운영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3				3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9급	소계	319	146	1	14	48	110
		행정	88	42			4	42
		세무	4	4				
		전산	3	3				
		사회복지	75	16				59
		사서	5	5				
		공업	23	7			16	
		농업	1	1				
		녹지	5	5				
		해양수산	4	4				
		보건	5			5		
		식품위생	1			1		
		환경	4	3			1	
		시설	23	20			3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	9					9

		행정+전산	4	3			1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7	6			1	
		행정+방재안전	1	1				
		사회복지+보건	3			3		
		공업+시설	2	2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2			2		
		방호	1	1				
		운전	20	10	1	3	6	
		시설관리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7				7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2	1			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4	3			1	
연구직		연구사합계	17	4			13	
		학예연구사	11	3			8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3	3				
		농촌지도사	3	3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3차 활성화계획 (중대)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목포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목 포 시 장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개요

1) 계획의 개요

사업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변경)
보리마당	근린재생형 (주거지지원형)	목포시 서산동 일원	324,000㎡	도시재생 뉴딜구역 111,645㎡ (증 12,092㎡)

2) 사업기간 (변경)

(당초) 2018년 ~ 2023년(6년간)

(변경) 2018년 ~ 2024년(7년간)

3) 사업시행자 : 목포시장 (변경없음)

【목포시 보리마당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위치】

[변경]



2. 계획의 세부내용

1)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 (**변경없음**)

- 비 전 : “바다를 품은 보리마당 행복마을 만들기”
- 목 표 : 온 주민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 시켜 놀거리, 볼거리, 생각거리가 풍부한 마을 조성
- 추진전략 :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마을 조성
놀거리, 볼거리, 생각거리가 풍부한 테마마을 조성
온 주민이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화합마을 조성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변경**)

- 마중물사업 (**변경**)

구분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소계			232.39	중 52.39억 원(자체지방비 52.09, 민간 0.3)	
마을	행복마을	① 공공편익시설 조성	41.52	· 공공편익시설(경로당) 조성 · 구)임대주택부지 주차장 조성	
		② 주거환경정비(주택 리모델링)	3.3	·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관련 마을기업 육성)	
		③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설치 - 공폐가 활용 생활인프라 설치 - 소방도로 조성	52.67	· 골목길 및 계단 정비를 통한 보행편의, 안전성 확보 · 공폐가를 활용한 쌈지전망공원 및 근린편익시설 확보 · 점단위 관광자원들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소방도로 조성	
		④ 공영주차장 설치	22.84	·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테마마을	⑤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	17.51	· 보행친화형 가로조성 및 거리 쉼터 제공 · 보리언덕 조성으로 휴식 공간 및 경관 조망 공간 제공	
		⑥ 지붕경관 관리사업	5.0	· 노후불량 지붕 정비를 통한 지역특화 및 아름다운 경관 창출	
		⑦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54.78	· 공폐가 리모델링으로 예술인 입주 지원 및 창작활동지원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마을조성	
	마을사업	⑧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19.45	·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할 커뮤니티 공간 설치
			지역축제 지원 (보리마당 마을축제)	0.5	· 서산동 보리마당 마을축제 기획 및 운영
		⑨ 프로그램 사업	주민-청년예술인 상생협력 프로젝트	1.16	· 예술인과 주민간 화합 및 지역수익 창출
			사업정산 및 모니터링	0.72	· 보리마당 사업 정산 및 기록화,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활성화계획 수립	1.4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⑩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역량강화	4.04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개최	
⑪ 현장지원센터 운영			7.2	· 사업지의 도시재생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 운영	
⑫ 마을유지 관리			0.3	·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지원	

- 부처협력 및 공기업 참여 사업 (사업기간 연장)

구분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소 계		62.7	(변경없음)
부처 연계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2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마중물 사업에서 제외 후 별도 추진 (국토부 부처연계사업 : 28.2억, 공기업 참여형 사업 : 34.5억) · 오피스텔 리모델링 후 공급(66호/9.5평) · 청년문화예술창작촌 임대주택 신축(15호) · 기타 부대시설 등
공기업 참여		34.5	

※ 당초 마중물 사업 포함되어있던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을 부처협력사업(국토부) 및 공기업 참여(전남개발공사) 사업으로 추진

- 지자체 사업 (사업기간 연장)

구분	사업명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소 계		19.6	(변경없음)
지자체 연 계	1. 상수도 노후관로사업	4.6	· 사업지구 내 상·하수도관 정비,
	2. 해안로 주차장 조성	15.0	· 목포시 해안동 3가 주차장 조성

3)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

- (총사업비) 314.69억원(마중물 232.39, 부처 및 공기업 협업 62.7, 지자체 19.6,)
 - 마중물사업 : 공공편익시설 조성 등 12건 232.39억원
(국비 100, 도비 16.7, 시비 63.3, 자체지방비 52.09, 민간 0.3)
 - 부처 및 공기업 협업 :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 62.7억원(국 28.2, 공기업 34.5)
 - 지자체사업 : 상수도 노후관로사업 등 3건 / 19.6억원(자체지방비)

- 재원조달계획 (변경)

구분	사업명	총 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기금 활용	비고		
			재정 보조	부처 연계	시도	시군구	자체 시비	공기업	민간				
총 사업비		314.69	100.00	28.20	16.80	82.80	52.09	34.50	0.30	-	-		
마 중 물 사 업	소 계	232.39	100.00	-	16.80	63.20	52.09	-	0.30	-	-		
	행 복 마 음	① 공공편익시설 조성	41.52	26.52	-	4.61	7.43	2.96	-	-	-	-	
		② 주거환경정비(주택 리모델링)	3.30	-	-	-	3.0	-	-	0.30	-	-	
		③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설치 - 공폐가 활용 생활인프라 설치 - 소방도로 조성	52.67	18.77	-	6.57	6.31	21.02	-	-	-	-	
		④ 공영주차장 설치	22.84	19.52	-	0.77	2.55	-	-	-	-	-	
	테 마 마 음	⑤ 보리마당로 가로정비 및 보리언덕 조성	17.51	10.81	-	0.32	3.43	2.95	-	-	-	-	
		⑥ 지방경관 관리사업	5.00	-	-	-	5.0	-	-	-	-	-	
		⑦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54.78	17.57	-	3.72	11.11	22.38	-	-	-	-	
	화 합 마 음	⑧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19.45	6.33	-	0.33	10.73	2.06	-	-	-	-	
		⑨ 프로그램 사업	지역축제 지원 (보리마당 마을축제)	0.50	-	-	-	0.50	-	-	-	-	-
			주민-청년예술인 상생협력 프로젝트	1.16	-	-	-	1.16	-	-	-	-	-
			사업장산및모니터링	0.72	-	-	-	-	0.72	-	-	-	-
활성화계획 수립			1.40	-	-	-	1.40	-	-	-	-	-	
⑩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역량강화	4.04	0.48	-	0.48	3.08	-	-	-	-	-	
⑪ 현장지원센터 운영		7.20	-	-	-	7.20	-	-	-	-	-		
⑫ 마을유지 관리	0.30	-	-	-	0.30	-	-	-	-	-			
부 처 및 공 기 업 연 계	소 계	62.70	-	28.20	-	-	-	34.50	-	-	-		
	㉓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62.70	-	28.20	-	-	-	34.50	-	-	-		
지 자 체 사 업	소 계	19.60	-	-	-	19.60	-	-	-	-	-		
	㉔ 상수도관 정비사업	4.60	-	-	-	4.60	-	-	-	-	-		
	㉕ 해안로 주차장 조성	15.00	-	-	-	15.00	-	-	-	-	-		

※ 기능복합 순환형 임대주택 마중물 사업 제외 후 추진[‘21년 1차 활성화계획 (중대)변경 시]

- 예산집행계획 (변경)

구분		기투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마중물 사업	국비	-	-	39.9	27.0	21.0	12.1	-	-	100.0
	지방비	-	0.2	2.9	11.1	3.8	22.0	40.0	52.09	132.09
	공기업	-	-	-	-	-	-	-	-	-
	기금	-	-	-	-	-	-	-	-	-
	민간	-	-	-	-	-	-	-	0.3	0.3
	계	-	0.2	42.8	38.1	24.8	34.1	40.0	52.39	232.39
중앙부처 및 공기업 협력사업	국비	-	-	-	-	19.0	9.2	-	-	28.2
	지방비	-	-	-	-	-	-	-	-	-
	공기업	-	-	-	-	-	10.0	24.5	-	34.5
	기금	-	-	-	-	-	-	-	-	-
	계	-	-	-	-	19.0	19.2	24.5	-	62.7
지자체 사업	국비	-	-	-	-	-	-	-	-	-
	지방비	-	-	-	-	19.6	-	-	-	19.6
	공기업	-	-	-	-	-	-	-	-	-
	기금	-	-	-	-	-	-	-	-	-
	계	-	-	-	-	19.6	-	-	-	19.6
사업비 합계		-	0.2	42.8	38.1	63.4	53.3	64.5	52.39	314.69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파급효과 (변경없음)

1) 보리마당 주거환경 개선

- 노후·불량 주택 정비 및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주거안정성 확대
- 공·폐가 활용을 통한 쌈지공원 및 근린편익시설 설치로 인한 정주환경 개선

2)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청년인구 유입

- 공공편익시설 확보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역 쾌적성 증대
-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을 통한 청년 예술인 유입과 일자리 창출 도모

3)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상생프로젝트 및 함께하는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각종 이벤트 및 마을 축제 개최로 인한 주민화합 도모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변경)

1) 도로시설 (변경)

사업명	규모		구역	기능	내용
	폭원 (m)	연장 (m)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설치 -소방도로 조성	4	550m	광장오피스텔~ 유달동행정복지 센터 후면	소방도로	- 보행전용도로 (L=550m, B=4m) 조성

2) 주차장

사업명	위치	규모		내용
		면적 (㎡)	주차면수 (대)	
공영주차장 설치	금화동 7번지 일원	1,143	30	- 서산동 지역 관광객 증가로 인해, 주민 들의 주차 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 -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1개소 조성

3) 공원 및 공공공지

사업명	면적 (㎡)	구역	기능	내용
보리언덕 조성	4,400	서산동 14-78번지 일원	근린공원	- 보리언덕의 지형과 특징을 살려 지역 활성화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 계획

4) 공동이용시설 (변경)

사업명	면적 (㎡)	구역	기능	내용
공공편의시설 (경로당)	258.6	금화동 12-27	경로당 및 커뮤니티 공간	- 1층) 금화경로당 - 2층) 現 현장지원센터 後 협동조합 사무실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	1,267	서산동 8-6번지 일원	복합 커뮤니티 공간 등	- 서산경로당 신축 - 행복커뮤니티 2동 신축 (판매장 및 판매공장)
청년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4,733	서산동 12-62번지 일원	청년 예술인 숙소, 창작공간 등	- 창작공간, 체험공간, 커뮤니티 및 전시공간, 청년예술인 숙소 등 조성
골목길 정비 및 생활인프라 조성	1,623	금화동 1-3번지 등	근린편의시설 및 썬지공원	- 공폐가를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주민편의 공간으로 활용 또는 공원 조성

목포시 훈령 제 850호

목포시 공간정보 보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1월 2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공간정보 보안규정 일부개정규정

목포시 공간정보 보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한다.

1. “공간정보”라 함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제2조 제2호 중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을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속기관 : 공간정보 관련 업무부서의 장

제11조제1항 중 “중 비밀보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보안대책”을 “보안대책 마련”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받은 사람을”을 “특례 업체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항공 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의 소유자와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 단,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 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 단,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 정보원장 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료 정보가 포함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포함) 이외 지역의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포함 가능
전자 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 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 공간 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해역 수심 자료 ○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 해도, 전자해도 등
기타 공간 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시스템, 도로명 주소 기본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간정보	등 급	분류기준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좌표가 있고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 도로명 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공간정보”라 함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 및 속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p> <p>2. “공간정보체계”라 함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 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 (정의) ----- -----.</p> <p>1. “공간정보”라 함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p> <p>2. ----- -----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 ----- ----- -----.</p> <p>3.·4. (현행과 같음)</p>

제5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생략)
2. 소속기관 : 공간정보업무 담당과장(직제에 과장이 없는 기관은 차상위 부서의 장 또는 그 기관의 장)

② (생략)

제11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중 비밀보호에 관한 부분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제12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

-----.

1. (현행과 같음)
2. 소속기관 : 공간정보 관련 업무부서의 장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

----- 에 따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

-----.

1.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방지

2. ~ 6. (생략)

② (생략)

제13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시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
보 유통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위·
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
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
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
대책

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생략)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를
외주 용역 할 경우 보안업무규
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
밀취급 인가 받은 사람을 이용
하여야 한다.

③ (생략)

1.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

-----.

1. ~ 4. (현행과 같음)

5. -----

----- 보안대책 마련

제17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
례 업체를 -----.

③ (현행과 같음)